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4일, 서명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 22.)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1.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 의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

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 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현행법에서는 식약처장이 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의2), ②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제25조의4),

③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의5),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경우 관련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 1회 이상 게시, 검사 및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의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은 2020년 4조 3,600억원에서 2023년 6조 7,000억원으로 약 53.4%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 품목별로는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의 직접구매액이 약 3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음·식료품으로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였음.

< 최근 4년간 음·식료품 해외 직접구매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해외직구 (전체)	4,355,738	5,257,402	5,945,356	6,681,913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1,658,050	2,144,394	2,639,972	3,069,938
음·식료품	1,121,307	1,341,210	1,471,854	1,501,691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의한 정상 수입식품과는 달리 통상적인 수입신고·검사¹⁾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섭취되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있어, 식약처는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 원료·성분 함유 식품 등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²⁾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34개에 대하여 기획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 유형 >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과자	차	캡슐 커피	식이 보충제	합계
13	5	4	3	3	3	1	2	3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서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검사 및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지키려는 것으로 이해됨.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화) 다만, 개정안 제25조의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5조의2³⁾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⁴⁾에 따라 식약처장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를 인터넷 홈페이지(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상시 게시하고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5년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내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한 정보 건수는 아래와 같음.

< 연도별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 게시 건수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8월
정보게시(건수)	418	571	260	363	26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실시 의무화) 또한, 개정안 제25조의4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현행법 제25조의3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⁶⁾에 따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⁷⁾ 및 제5조의2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야 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2. ~ 7. (생략)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8)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의 경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9)가 최근 마련되어 시행('24. 6. 14)되었으며,

식약처는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10)에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임.

< 연도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구매검사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8.
검사(건)	1,630	3,000	3,000	3,100	3,400(목표치)
위해성분검출(건)	148	296	273	281	232
부적합율(%)	9.1	9.9	9.1	9.1	6.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한편, 현행법 제25조의5에서는 식약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8)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 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시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 영업자에 의한 정상 수입식품과는 달리 통상적인 수입신고·검사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섭취되고 있어 식약처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11)에 근거하여 식약처장이 관세처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제1항1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함)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고 해도 「관세법」 제322조에 따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13)

11)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13)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51호)

제21조(통계 등의 제공원칙) ① 통계자료는 가공된 형태의 무역통계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계자료는 제2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항목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관기초자료는 월별 또는 연도별 수출입신고사항 전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법 제116조제1항 각

에서는 통관기초자료는 월별 또는 연도별 수출입신고사항 전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키워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통관기초자료는 품목번호(HS 코드)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제품명으로는 반입현황을 알기 어렵고, 수입신고 항목에 원료·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삭제하고, 마약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호에 따른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구인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경우 통상적인 수입신고·검사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삭제하고(안 제25조의5 단서 삭제), 마약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로 한다.

안 제25조의4제1항 단서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를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로 한다.

안 제25조의5제1항 단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위해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등에 관한 정 보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 ----- ----- ----- ----- ----- ----- ----- ----- ----- <u>「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상의 마약 류 원료·성분이 포 함되거나 포함될 가 능성이 있는 직접구 매 해외식품등에 관 한 정보를 인터넷 홈 페이지에 연 1회 이 상 게시하여야 한다.</u>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 ----- ----- ----- ----- ----- ----- ----- ----- ----- ----- <u>「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마약류(이 하 “마약류”라 한다) 에 해당하는 원료· 성분</u> ----- ----- -----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생략)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 ----- ----- ----- ----- ----- .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 ----- ----- -----

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 -----. 다만,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 ·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 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 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